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 용 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호구역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제한과 속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보호구역 등의 인근에 공사장이 있는 경우의 안전 관리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또는 통학로 인근의 공사장이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가림막 미설치, 자재 불법 적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학교 주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안전 관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